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58

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정춘생·조 국·신장식

김재원 · 김선민 · 김준형

서왕진 · 차규근 · 황운하

박은정 • 강경숙 • 김종민

이해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.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임.

그러나 이 세부계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만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고,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 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 려는 것임(안 제76조 및 제80조의2 신설 등).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"을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"으로 한다.

제79조제1항제6호 중 "제주특별자치도계정"을 "제주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"으로 한다.

제80조제1항제2호 중 "지역지원계정"을 "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 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지역 지원계정"을 "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" 으로 한다.

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80조의2(강원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강원특별자 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- 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

- 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
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- ② 회계의 강원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강원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
 가.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따른
 보조 및 지원
 - 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·보조·융자 및 지원 등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
- 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80조의3(전북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전북특별자 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

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
- 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
- 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
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- ② 회계의 전북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전북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
 - 가.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
 - 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·보조·융자 및 지원 등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
- 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지역지원계정"을 각각 "지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76조(계정의 구분) 회계는 지역 제76조(계정의 구분) -----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 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치 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. 도계정. 전북특별자치도계정---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-----세출)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제주</u> 6. ------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특별자치도계정, 강원특별자 치도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. ~ 11. (생략) 7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 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 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제주특 입과 세출) ① -----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2. -----지역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<u>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-----</u>

- 3. ~ 5. (생략)
-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3. (생략)
- 4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
5. (생략)

③ (생략)

<신 설>

2		_	/ ᅱ 케 킈	7) ())
. 3.	\sim	D .	(헍행과	같음)

② 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-<u>지</u> 역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 계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---

- 5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80조의2(강원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강원 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
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 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 의 전입금
- 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

- 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

 상 잉여금
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- ② 회계의 강원특별자치시계정의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강원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융 자 등
 - 가.
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

 호
 바목은
 제외한다)
 및

 제7호에
 따른
 보조
 및
 지
 - 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제16호에 따른 출연·보조・융자 및 지원 등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사업
- 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 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

<신 설>

출금
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 에 필요한 경비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- 제80조의3(전북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전북 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
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 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 의 전입금
 - 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
 - 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상 잉여금
 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 - ② 회계의 전북특별자치시계정의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전북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융 자 등
 - 가.
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

 호 바목은 제외한다) 및

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

 원
 - 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
 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
 제16호에 따른 출연・보조
 ・융자 및 지원 등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사업
- 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 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 출금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 에 필요한 경비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제81조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세종특 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(생략)
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</u> <u>지원계정</u>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- 3. ~ 5. (생략)
-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·2. (생략)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<u>지역</u> <u>지원계정</u>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의 전출금
- 4. (생략)
- ③ (생 략)

로 정한다. 제81조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입과 세출) ①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 <u>지역</u>
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
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
3. ~ 5. (현행과 같음)
2
1.·2. (현행과 같음)
3 <u>지</u> 역
지원계정, 강원특별자치도계
정, 전북특별자치도계정

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